



제422회 국회(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피해학생 보호조치 비용 상환청구권의 실효성 강화〉

■ 박성훈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5713호)

2025. 2.

교 육 위 원 회

전문위원 윤상열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I. 제안경위

가. 발 의 자 : 박성훈의원 등 10인

나. 발 의 일 : 2024. 11. 20.

다. 회 부 일 : 2024. 11. 2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학교폭력 피해학생이 전문단체나 전문가로부터 심리상담 등을 받는 데에 사용되는 비용은 가해학생의 보호자가 부담하도록 함.

다만, 피해학생의 신속한 치료를 위하여 학교장 또는 피해학생의 보호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학교안전공제회 또는 시·도교육청이 부담하고 이에 대한 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상환 기간에 대한 규정이 없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학교폭력과 관련하여 소요된 피해학생의 상담·치료 등을 위한 비용은 반드시 가해자 또는 가해학생의 보호자가 부담하도록 그 책임을 명확히 하고, 가해자 또는 가해학생의 보호자는 상환을 청구 받은 날부터 50일 이내에 상환하도록 하여 상환 청구의 실효성을 높여주는 것임(안 제16조).

Ⅲ. 검토의견

개정안은 피해학생이 전문단체나 전문가로부터 심리상담 등을 받는 데 사용되는 비용에 교통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대비용을 포함하고, 가해자 또는 가해학생의 보호자가 상환 청구를 받은 날부터 50일 이내에 이를 상환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6조).

현행	개정안
제16조(피해학생의 보호) ① ~ ⑤ (생략)	제16조(피해학생의 보호)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 피해학생이 전문단체나 전문가로부터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상담 등을 받는 데에 사용되는 <u>비용은 가해학생의 보호자가 부담하여야 한다.</u> 다만, 피해학생의 신속한 치료를 위하여 학교의 장 또는 피해학생의 보호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학교안전공제회 또는 시·도교육청이 부담하고 이에 대한 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⑥ ----- ----- ----- ----- <u>비용(교통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대비용을 포함한다)은 가해자 또는 가해학생의 보호자</u> ----- ----- -. ----- ----- ----- ----- ----- -----.
<신설>	⑦ <u>가해자 또는 가해학생의 보호자는 제6항 단서에 따라 상환을 청구 받은 경우에는 청구를 받은 날부터 50일 이내에 상환하여야 한다.</u>
⑦·⑧ (생략)	⑧·⑨ (현행 제7항 및 제8항과 같음)

현행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¹⁾은 학교폭력심의위원회가 부과할 수 있는 피해학생 보호조치로 전문가에 의한 심리상담 및 조언, 일시보호, 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 학급교체 및 그 밖에 피해학생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규정하고 있는데,

같은 법 제16조제6항²⁾에 따르면, 피해학생이 전문단체나 전문가로부터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상담 등을 받는 데에 사용되는 비용은 가해학생의 보호자가 부담하여야 함. 다만, 피해학생의 신속한 치료를 위하여 학교장 또는 피해학생의 보호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학교안전공제회 또는 시·도교육청³⁾이 부담하고 이에 대한 상환청구권(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상환 기간에 대한 별도 규정은 없음.

1)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6조(피해학생의 보호) ① 심의위원회는 피해학생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피해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수 개의 조치를 동시에 부과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할 것을 교육장(교육장이 없는 경우 제12조제1항에 따라 조례로 정한 기관의 장으로 한다. 이하 같다)에게 요청할 수 있다. 다만, 학교의 장은 학교폭력사건을 인지한 경우 피해학생의 반대의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지체 없이 가해자(교사를 포함한다)와 피해학생을 분리하여야 하며, 피해학생이 긴급보호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6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의 장은 심의위원회에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1.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심리상담 및 조언

2. 일시보호

3. 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

4. 학급교체

5. 삭제

6. 그 밖에 피해학생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

2)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6조(피해학생의 보호) ⑥ 피해학생이 전문단체나 전문가로부터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상담 등을 받는 데에 사용되는 비용은 가해학생의 보호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다만, 피해학생의 신속한 치료를 위하여 학교의 장 또는 피해학생의 보호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학교안전공제회 또는 시·도교육청이 부담하고 이에 대한 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3) 교육부측 설명에 따르면, 실제로는 시·도교육청이 부담하는 경우는 없고 학교안전공제회가 부담 및 상환청구 업무를 전담하고 있음.

이에 따라 최근 5년간 학교안전공제회의 상담 및 치료 비용 지급건수는 2,512건에 이르며, 모든 건에 대해 가해학생 보호자를 대상으로 한 상환 청구가 이루어졌음. 그러나 787건이 여전히 상환 진행 중인 상태로, 상환율은 68.7% 수준에 머무르고 있음.

< 학교안전공제회 상환청구 현황 >

연도	지급건수	상환청구 건수	상환 건수	
			상환 완료	진행 중
2020	304	304	231	73
2021	309	309	222	87
2022	475	475	350	125
2023	680	680	473	207
2024	744	744	449	295
계	2,512	2,512(100%)	1,725(68.7%)	787(31.3%)

자료: 학교안전공제중앙회

이에 개정안은 비용 부담 및 상환 의무자에 기존의 가해학생 보호자에 더해 가해자를 추가하고, 가해학생의 보호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의 범위에 교통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대비용⁴⁾이 포함되도록 명확히 하며, 가해자 또는 가해학생의 보호자는 상환을 청구받은 날부터 50일 이내에 상환하도록 규정하여 상환 청구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임.

비용 부담 및 상환 의무자에 가해자를 추가한 것은 ‘학교폭력’의 개념이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하는 다양한 형태의 폭력행

4) 교육부 설명에 따르면, 부대비용 청구에 관한 규정은 없으나 현재도 가해학생의 보호자에게 부대비용을 같이 청구하고 있고, 일부 보호자의 경우 부대비용은 상환하지 않고 있으나 이에 대한 강제규정은 없는 상황임.

위로 광범위한데 반해⁵⁾, 가해자가 학생이 아닌 경우 비용 부담 주체가 불분명한 문제가 발생하므로 이를 보완하려는 것이고, 비용의 범위에 교통비 등 부대비용을 포함하는 것은 피해학생을 더욱 폭넓게 보호하고 원거리 병원이나 전문 상담기관을 이용해야 하는 경우 피해학생의 부담을 경감하려는 것임.

또한 상환 의무 이행 기간을 50일로 설정하려는 것은 최근 5년간 상환율이 68.7%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과 같이 가해학생 보호자가 부담해야 할 비용을 제때 상환하지 않는 문제를 해소하여 피해 학생 지원 체계를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한 것으로 보임.

한편, 상환 의무 이행 기간을 50일로 정하는 것과 관련한 주요 입법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⁶⁾(치료보호)는

5)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모욕, 공갈, 강요·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폭력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

6)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치료보호) ① 의료기관은 피해자 본인, 가족, 친지나 긴급전화센터, 상담소 또는 보호시설의 장 등이 요청하면 피해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치료보호를 실시하여야 한다.

1. 보건의에 관한 상담 및 지도
2. 신체적·정신적 피해에 대한 치료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료에 관한 사항

② 제1항의 치료보호에 필요한 일체의 비용은 가정폭력행위자가 부담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치료보호비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가정폭력행위자를 대신하여 제1항의 치료보호에 필요한 비용을 의료기관에 지급하여야 한다.

④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제3항에 따라 비용을 지급한 경우에는 가정폭력행위자에 대하여 구상권(求償權)을 행사할 수 있다. 다만, 피해자가 보호시설 입소 중에 제1항의 치료보호를 받은 경우나 가정폭력행위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정폭력 피해자의 치료보호에 필요한 일체의 비용을 가정폭력행위자가 부담하도록 하되 피해자가 신청하는 경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치료 보호에 필요한 비용을 의료기관에 지급하여야 하며, 이 경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가정폭력행위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다만, 가정폭력행위자가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장애인인 경우에는 청구할 수 없으며, 동법 시행규칙 제17조제5항7)(치료보호 비용의 지급절차 등)은 구상금 납부 통지를 받은 가정폭력행위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구상금액을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에 따라 교육 활동 침해행위로 피해를 입은 교원의 보호조치에 필요한 비용은 동법 제20조8)(피해교원에 대한 보호조치 등)에 따라 침해행위를 한 학생의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受給者)

2.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⑤ 제3항의 비용을 지급하기 위한 절차, 제4항의 구상권 행사(行使)의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7)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7조(치료보호비용의 지급절차 등) ⑤ 제4항에 따라 구상금 납부 통지를 받은 가정폭력행위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구상금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8)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20조(피해교원에 대한 보호조치 등) ①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지도·감독기관(국립의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경우에는 교육부장관, 공립·사립의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경우에는 교육감을 말한다. 이하 “관할청”이라 한다)과 그 학교의 장은 교육활동 침해행위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즉시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피해를 입은 교원(이하 “피해교원”이라 한다)의 치유와 교권 회복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조치(이하 “보호조치”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1. 심리상담 및 조언

2. 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

3. 그 밖에 치유와 교권 회복에 필요한 조치

(생략)

⑤ 피해교원의 보호조치에 필요한 비용은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한 학생의 보호자 등이 부담하여야 한다. 다만, 피해교원의 신속한 치료를 위하여 피해교원 또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의 장이 원하는 경우에는 관할청이 부담하고 이에 대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보호자가 부담하되 신속한 치료를 위하여 피해를 입은 교원 혹은 학교의 장이 원하는 경우에는 관할청이 부담하고 이에 대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비용의 범위 및 구상권 행사 예외조항(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등)은 동법 시행령 제19조9)에서 규정하고 있음.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3¹⁰⁾(불법촬영

⑥ 제2항에 따른 특별한 사유 및 분리조치의 방법·기간·장소, 제5항에 따른 보호조치 비용부담 및 구상권의 범위·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9)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19조(피해교원 보호조치에 대한 비용부담 등) ① 법 제20조제5항에 따른 보호조치에 필요한 비용의 부담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할청이 정하는 전문심리상담기관에서 심리상담 및 조언을 받는 데 드는 비용
2.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요양기관에서 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을 받거나 의약품을 공급받는 데 드는 비용

② 법 제20조제5항 단서에 따른 구상권의 범위는 제1항 각 호의 비용으로서 관할청이 부담하는 모든 비용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구상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사하지 않을 수 있다.

1. 법 제20조제5항 본문에 따른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한 학생의 보호자(친권자, 후견인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학생을 부양할 의무가 있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등(이하 이 조에서 “보호자등”이라 한다)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나.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2. 그 밖에 구상금액이 소액인 경우 등 구상권을 행사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다고 관할청이 인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③ 관할청은 법 제20조제5항 단서에 따라 구상권을 행사하려는 경우에는 구상금액의 산출 근거 등을 분명히 밝혀 이를 납부할 것을 서면으로 보호자등에게 통지해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보호조치 비용부담 및 구상권 행사에 필요한 사항은 관할청이 정하여 고시한다.

10)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3(불법촬영물등으로 인한 피해자에 대한 지원 등) ① 국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 등(이하 이 조에서 “촬영물등”이라 한다)이 정보통신망(「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유포되어 피해(촬영물등의 대상자로 등장하여 입은 피해를 말한다)를 입은 사람에 대하여 촬영물등의 삭제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에 따른 편집물등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3.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아동·청소년성착취물(생략)

④ 제1항에 따른 촬영물등 삭제지원에 소요되는 비용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제14조의2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성폭력행위자 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행위자가 부담한다.

⑤ 국가가 제1항에 따라 촬영물등 삭제지원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출한 경우 제4항의 성폭력

물등으로 인한 피해자에 대한 지원 등)에서는 국가가 피해자에게 촬영물 등 삭제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면서 성폭력행위자 등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시행규칙 제2조의6제7항11)(불법촬영물등 삭제 지원 내용 및 방법 등)은 통지를 받은 범죄행위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구상금액을 납부하도록 하고 있음.

〈 구상권 행사 관련 개정안과 현행 주요 법률 비교〉

법안명	상환기간	구체적 비용 범위	구상권 청구 예외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50일 (법률)	시행령에 위임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15일 (시행규칙)	-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법률)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	시행령에 규정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소액인 경우 (시행령)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30일 (시행규칙)	-	-

이러한 입법례를 고려할 때, 50일이라는 단기간 내에 상환을 강제하는 경우 경제적 여력이 부족한 가정의 부담이 가중될 우려가 있으므로, 기초생활수급자 및 장애인 등에 대한 예외를 둘 필요성이 제기됨.

행위자 또는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행위자에 대하여 구상권(求償權)을 행사할 수 있다.

⑥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촬영물등 삭제지원의 내용·방법, 제3항 후단에 따른 자료 보관의 방법·기간 및 제5항에 따른 구상권 행사의 절차·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11)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의6(불법촬영물등 삭제 지원 내용 및 방법 등) ⑦ 제6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성폭력행위자 또는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행위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구상금액을 납부 해야 한다.

또한, 개정안은 청구일로부터 50일 이내에 상환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나, 기한 초과 시 이를 강제할 별도의 벌칙 규정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합리적인 제재 방안을 함께 마련할 필요성이 있음. 아울러, 부대비용의 범위 및 인정 기준과 관련하여 논란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그 기준을 어떠한 방식으로 명확하게 규정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함.

< 개정안 관련 교육부, 시·도교육청 등 의견 >

○ 교육부: 일부수정, 신중검토

- (안 제6항: 일부수정) 개정안의 입법취지에 공감하나, 비용의 범위를 교통비 등을 포함한 부대비용으로 넓힐 경우 명확하지 않은 부대비용의 청구로 인해 피·가해학생간 추가적인 갈등이 생겨 원만한 관계 회복을 어렵게 하는 요소로 작용할 것이 우려되어 해당 문구는 삭제할 필요가 있음.
- (안 제7항: 신중검토) 상환일을 지키지 않는 경우 가해 학생 보호자에 대한 제재규정이 명확하지 않아 자진변제를 담보할 수 없으며, 상환청구와 관련하여 가해학생 측과 공제회 간 분쟁이 증가할 우려가 있으며 가해자 및 가해학생 보호자의 경제적 능력을 감안하여 현재와 같이 분할상환하게 하거나 상환기간을 연장해 줄 필요가 있음.

○ 시·도교육청: 신중검토

- 강원: 가해자 및 가해학생 보호자에게 반드시 피해학생의 치료·상담 비용을 부담 시키거나 청구할 경우 과다 상담이나 과잉 치료를 받는 등 이를 악용할 소지가 있게 될 것임.
- 충북: 현행으로도 안전공제회 또는 시도교육청이 피해 비용을 선 부담하고 그에 대한 상환청구권을 행사함으로써 피해 학생의 보호가 이루어지고 있음. 굳이 비용의 범위를 교통비 등을 포함한 부대비용으로 넓혀서 불필요한 감정적 갈등이 생기도록 할 필요가 없음. 피해 비용의 범위가 확대되는 것이 오히려 원만한 관계 회복에 어려움의 요소로 작용할 것으로 염려됨.

○ 학교안전공제회: 신중검토

- (안 제6항) 교통비 등 부대비용은 입증과 판단에 어려움이 있으며, 개인 선호도에 따라 거주지와 상당 거리가 있는 의료기관, 상담 기관에서 치료를 진행하는 경우 해당 비용에 대한 적정성을 확인할 수 없고, 이를 가해 학생이 부담하게 하는 것은 제도 악용이 매우 우려됨.

- (안 제7항) 상환일(50일)을 지키지 않는 경우 가해학생 보호자에 대한 제재규정이 명확하지 않아, 법률개정만으로도 가해학생 측의 자진변제를 담보할 수 없고, 오히려 가해학생 측과 공제회 간의 분쟁 증가 우려 있음. 분할상환 및 상환기간 연장 등 가해자 및 가해학생 보호자의 경제적 능력을 감안하여 상환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문 의 처

02)6788-5184